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315
------	------

2020. 4. 23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2월 5일, 권수정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2월 12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20. 4. 23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권수정 의원)

1. 제안이유

가. 지역개발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조성 방법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“출연금” 으로 명시하고 있음.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정하는 예산과목인 “기금전출금” 으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“출연금” 을 “기금전출금” 으로 변경함
(안 제3조).

- 출 연 금: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- 기금전출금: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

나. 한글 어문 규정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(안 제13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중 ‘출연금’ 을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(이하 “기금수립기준”)에 부합한 수입항목으로 정비해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조성 현황

- 지역개발기금(이하 “지역기금”)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.

- “지역기금”은 종전까지 공기업특별회계인 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”(이하 “지역특별회계”)로 관리·운용되었으나 2017년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이 개정·시행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‘기금’으로 전환되었음.
- 그동안 “지역기금”은 두 차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2007년 도시기반시설본부(이하 “도기본”)에 1,500억 원, 2008년 서울주택공사(이하 “SH공사”)에 1,442억 원을 지원했으며, 현재 모두 회수된 상태임.
- 7년 만기상환인 지역개발채권은 2013년과 2015년에 각 채권상환계좌로 지급을 완료하였고,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억 9백만 원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음.

<지역특별회계 채권발행 및 용자실적>

(단위 : 억원)

구분	'06	'07	'08	'09~'12	'13	'14	'15
채권발행내역	1,489	-	1,502	-	-	-	-
이자지출	-	-	-	-	270	-	272
상환내역	-	-	-	-	1,489	-	1,502
용자내역	-	1,500 (도기본)	1,442 (SH공사)	-	-	-	-
용자회수	-	-	-	-	1,500 (도기본)	-	1,442 (SH공사)

- 2020년도 말 지역기금의 조성액은 60억 6천 1백만 원이며,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7천 5백만 원은 별도의 사업 없이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임.

<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>

(단위 : 천원)

수입계획		지출계획	
항목	수입액	항목	지출액
합 계	1,175,155	합 계	1,175,155
예치금회수	1,042,528	기본경비	14,000
이자수입	132,627	예치금	1,161,155

라. 기금의 조성 재원 용어정비(안 제3조)

- 개정안은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명시된 서울시의 ‘출연금’ 을 지방자치단체의 ‘기금전출금’ 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.
- 행정안전부의 “기금수립기준” 은 기금의 수입과목을 전입금, 보조금, 차입금, 융자금회수(이자포함), 예탁금원금회수, 예치금회수, 예수금, 이자수입, 기타수입 등 9개로 명시하고 있음[참고자료].
- ‘출연금’ 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의 대행이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법인에게 지원하는 금전적 이전지출을 의미함.
- 따라서 민간이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·세출 외로 설치·운용하는 기금의 수입 과목으로는 적절치 않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.
- 이러한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종전의 “출연금” 을 “전입금” 으로 변경한 바 있음.

- 다만, 개정안의 ‘기금전출금’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 과목이므로, 기금의 조성 측면에서 볼 때 수입항목인 ‘전입금’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.
- ‘전출금’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며, ‘전출금’을 지원받는 기금 입장에서는 이를 수입 항목 중 ‘전입금’으로 계상¹⁾해야 함.
- 한편, 본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조성 자원 항목들 또한 “기금수립 기준”의 수입과목과 부합하지 않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.

<수정의견 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 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 2.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”이라 한다)의 발행수입 3. 기금의 운용수익금 4. 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 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	제3조(기금의 조성)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의 기금전출금 ----- ----- 2.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”이라 한다)의 발행수입 3. 기금의 운용수익금 4. 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 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	제3조(기금의 조성) (개정안과 같음) 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로부터의 전입금 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 2. 「 지방공기업법 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”이라 한다)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3.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.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1) 「2019 대한민국 재정」, 국회예산정책처(2019.3), 68면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요지

가. 수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과목을 기금 조성 수입항목으로 수정함 (안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).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1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4월 23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과목을 기금 조성 수입항목으로 수정함 (안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).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로부터의 전입금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”이라 한다)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
3.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
4.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
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<u>출연금</u>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</p> <p>2.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“지역개발채권“이라 한다)의 발행수입</p> <p>3. 기금의 운용수익금</p> <p>4. 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<u>기금전출금</u>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</p> <p>2. <u>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“지역개발채권“이라 한다)의 발행수입</u></p> <p>3. <u>기금의 운용수익금</u></p> <p>4. <u>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</u>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<u>지원금</u>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u>로부터의 전입금</u>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</p> <p>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<u>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“이라 한다)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</u></p> <p>3. <u>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</u></p> <p>4. <u>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</u>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<u>수입</u></p>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로부터의 전입금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” 이라 한다)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
3.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
4.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
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획조정실장
2. 기금분임운용관 : 재정균형발전담당관
3. 기금출납원 : 재정균형발전담당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의 <u>출연금</u>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</p> <p>2. <u>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</u>(이하“지역개발채권” 이라 한다)의 발행수입</p> <p>3. <u>기금의 운용수익금</u></p> <p>4. <u>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</u>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<u>지원금</u></p> <p>제13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<u>기금의</u>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<u>원인 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</u>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</u>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<u>로부터의 전입금</u>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</p> <p>2. 「<u>지방공기업법</u>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<u>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</u>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” 이라 한다) 발행으로 조성된 <u>차입금</u></p> <p>3. <u>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</u></p> <p>4. <u>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</u>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<u>수입</u></p> <p>제13조(기금관리공무원) <u>기금의</u>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<u>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</u>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